"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"

| 등록번호 | 세무1과-3771 |
|---------|------------|
| 등록일자 | 2016.2.25. |
| 결 재 일 자 | 2016.2.26. |
| 공개구분 | 부분공개(6) |

| 주무관 | 법인1팀장 | 세무1과장 | 기획경제국장 |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최주환 | 김회동 | 신길호 | 전결 02/26 김용운 | |
| 협조자 | 법인2팀장 | 이영범 | | |

탈루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를 위한

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

■ 추진배경

-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세회피 수단이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탈루세원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사후조치가 필요한 실정임
-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방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가 필요
- 추진근거: 지방세기본법 제110조 ~ 제113조 및 동법 제136조
 - → 서울시 「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」(세무과-2033(2016. 1.27))

■ 추진개요

⊚ 조사기간 : 2016. 3월 ~ 12월

조사대상 : 2011 ~ 2015년 까지

50억이상 부동산 신축·중축 법인(110개), 50억이상 부동산 유상취득 등 법인(463개), 1억이상 비과세·감면 받은 법인(233개)중

30여개 법인을 선정하여 조사

※ 우리구 법인현황 :19,322개(서울시97,895개의 19.7%, 강북구 735개의 26배)

강 남 구 (세 ^무 1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| 검토분야 | 확인 및 적시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관련 규정 및 근거 | 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서울시 세무과-2033(2016.1.27)호 『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』 |
| | ·지방세기본법 제110조~제113조, 제136조 |
| 추진 경위 |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 •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|
| 예산 사항 |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 •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138조, 서울시 및 자치구 포상금 지급조례 •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|
| | |
| 수 혜 자 및 범위 | 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 |
| 분 야 별 검토사항 (계속) | 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 ① 관련부서 협조 |
| 타 기관 사 례 | 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 타구 공통사항임 |
| 전 문 가 자 문 |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 해당없음 |

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

- ▶ 갈수록 지능화되는 조세회피 수단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
- ▶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방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함

I 개 요

1 세무조사 개요

□ 세무조사 목적

○ 조사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·서류 및 기타 물건을 심사, 조사 또는 확인하여 탈루세액의 발굴 및 추징 등으로 성실납세 유도 및 조세 정의실현

□ 조사대상

-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받지 아니한 납세자
- O 납세자의 신고내용의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
□ 근거법령

- 지방세기본법 제110조(세무조사 대상 선정) ~ 제113조(세무조사결과통지)
- 지방세기본법 제136조(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)

□ 세무조사 방법

- O 일반조사 : 특정납세자의 지방세 과세요건성립여부, 과세표준액 및 세율적용의 적정여부 조사
- O 기획조사: 일반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별도계획 수립
- O 서면조사 : 납세자가 과세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의한 세무조사
- O 직접조사: 납세자의 사업장,공장,주소지 등에 출장후 세무조사

- 세무조사 기본원칙(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3조)
 - O 신의성실: 신의·성실한 세무조사, 특히 이미 공지한 사항 반하는 처분금지
 - 근거과세 : 법인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세무조사
 - 조사비례 :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
 - O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: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 준수

【세무조사업무 흐름도】



2 기본 준수사항

- □ 조사예절·청렴 및 행동요령 등 준수
 - 조사 전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및 공무원증 제시
 -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
 - O 청렴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및 행동 매뉴얼 준수
 - 조사반은 반드시 <u>2인 이상을 1조</u>로 편성
 - O 기타 조사방법 등은 『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』 참조
- □ 흠결없는 세무 조사 추진
 - 세무조사 결과는 <u>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</u>
 - O 특수 사례 및 과점주주 해당여부 등 조사 후 징수부서 제공
 - 소송, 체납 등 대비 법인장부, 현장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 철저

2016년 세무조사 환경 및 추진목표

| 1 | 2 | 015년 | 직접 | 세 | 무조 | 사 결 | 1 山 | 로 석 | |
|---|----|------|------|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|----|
| | 직접 | 세무조 | 사법인수 | : | 13개 | 법인 | 16건 | 608백만원 | 추징 |

※ 2014년 8개 법인 737백만원 추징

- □ 세무조사 문제점
 - 인력·전문성 부족으로 지속적인 세무조사가 어려움
 - 일부 법인은 지방세 탈루·누락을 위한 과세표준 과소신고

2 2016년 지방세 세입환경

- \Box 중국경기 둔화,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(성장률3.2% \Rightarrow 3.0%)
- □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남구 소재 법인 수 감소 추세
 - '15.12.31.현재 : 19,322개 법인('09년 23,069개 대비 △16.3%)
- 탈루·누락세원의 철저한 발굴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의지 증대
 -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면제, 탈세·회피자에게는 엄정조치 필요

3 2016년 세원발굴 추징목표

- □ 세무조사 우리구 목표액 : 63억원
 - 자치구 목표액 350억원중 18% 차지※ 2015년 우리구 세무조사 목표액 : 87억원
- □ 총 추징 목표 : 자치구 미배시
 - 서울시 전체 추징목표 : 3,000억원('14년,'15년과 동일)

- 2015년 총 추징실적 : 1,587억원(목표 3,000억원 대비 51.9%)

※ 우리구 추징실적 : 313억원(서울시 전체 추징실적의 19.7% 차지)

| ┸ 추진방향 |
|---|
| 1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|
| □ 납세자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|
| □ 세무조사 운영요령 숙지 및 법인세원 집중 관리를 통한 세원 발굴 |
| 2 객관성 및 청렴성 확보 방안 적극 추진 |
| □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운영으로 객관성 확보 |
| □ 세무조사 청렴도 제고방안 적극 추진 등 |
| 3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적극 추진 |
| □ 영세·성실기업 및 우리구정책 참여기업 세무조사 면제 |
| ○ 2014,2015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(29개법인) 면제 |
| □ 기업부담 최소화하는 인터넷 신고 세무조사 적극 추진 |
| 4 중점 세무조사분야 시·구 협업 추진 |
| □ 중점 세무조사과제 발굴 및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등 |
| □ 중점 세무조사 등 별도계획 수립 시행 |

Ⅳ 추진계획

1 추진 일정 및 조사 대상

□ 추진 일정: 2016년 3월 ~ 12월

□ 조사 대상

-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
- 최근 5년간(2011년 ~2015년) 법인이 신·증축 취득하여 과표 50억이상 신고한 자료, 과표 50억 이상 유상취득 등으로 신고한 자료 및 세액 1억원 이상 취득세를 비과세·감면 받은 법인중 선정

[부동산 취득 법인 현황]

| 구 분 | 합계 | 과표 50억 이상 취득 법인 | 과표 50억 미만 취득 법인 |
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합계 | 3,871 | 573 | 3,298 |
| 신축 · 증축 | 709 | 110 | 599 |
| 유상취득 등 | 3,162 | 463 | 2,699 |

[비과세·감면 법인 현황]

| 합계 | 1억 이상 비과세·감면 받은 법인 | 1억 미만 비과세·감면 받은 법인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,033 | 233 | 800 |

※ 위 자료를 기준으로 취득물건현황, 법인현황, 비과세·감면 내용, 신고내용 불성실 여부등을 참작하여 탈루 및 오류의 우려가 있는 법인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.

○ 선정방법

- 법인 담당자별로 해당동 7개 법인정도 조사대상 선정 추천
-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위해 「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」 에서 조사대상 최종 선정

2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

〈세무조사 집중 조사사항〉

▶ 조사대상 세목

- 취득세.(구)등록세. 등록면허세. 재산세. 주민세.지방소득세등

▶ 과세표준

- 취득과표 중 중개수수료 등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
- 건물 신축시 과세표준 누락(건설자금이자, 금융비용 등)

▶ 대도시내 본 지점. 사치성 재산 등 중과세

- 본점(사실상)이전, 지점설치, 고급오락장, 고급주택
- ▶ 비과세 · 감면
 -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건·유보조건 등
- ▶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과표누락, 법인세할 안분착오

□ 세무조사 방향

- 직접조사와 인터넷(서면)조사를 병행하되,일괄적인 인터넷 조사 안 내문 발송은 지양하고 직접조사와 인터넷조사를 선별 구분하여 조 사 실시
- 자료제출 거부, 현장확인 거부 등 조사 불응시 재차 협조를 구하고 계속 거부시에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거 압수·수색 영장을 발부 받 아 조사 확행
- 탈세정보 자료 등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 결정 없이 기획 조사 수시로 시행

□ 일반원칙

- 조사결과 통지 및 적기 과세
 - 과점주주 과세자료 등 타 자치단체 추징자료 신속 통보
 - 부과제척기간 3개월 이내는 즉시 부과조치(시세징수규칙 제5조)

- O 중복조사 방지
 - 시·자치구간 중복조사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세무종합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

3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적극 추진

□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서면신고 지속 추진□ 신고장소 :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신고시스템(https://biztax.seoul.go.kr/)

□ 신고내용 : 결산서, 계정별 원장,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스캔 후 첨부

□ 조사내용

- 인터넷 제출자료의 과세표준 및 세율, 세액 등의 적정과세 여부 확인
- 부적정 자료는 납세자에게 통보 후 추징. 추가조사 필요시 직접조사

□ 추진일정

O 2016. 3월 ~ 4월 : 서면조사 안내문 발송 및 대상법인 등록

O 2016. 4월 ~ 5월 : 인터넷 서면신고서 접수 및 일반 접수

O 2016. 6월 : 미신고법인 재등록 및 인터넷 접수

O 2016. 7월 : 6월말 결산법인 신고대상 등록 및 신고접수

O 2016. 4월 ~ 12월 : 인터넷(서면)신고 접수 및 서면조사·결과통지

② 납세자의 맞춤형 세무조사 실시

□ 유보대상

- 법인세 신고기간 등 법정업무 처리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
- 세무서 등 타기관의 세무조사 중이거나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

□ 유보기간

- 법인세 신고기간 등 법정업무 처리시(매년 4월)
- 세무서 등 타기관의 세무조사 기간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 발생시

□ 운영방법

- O 자진보류
 - 법인세 신고기간 등 납세자의 보편적 적용기간에는 세무조사 미실시 또는 연기
- O 신청보류
 - 타 기관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 등은 시 및 자치구에서 알 수 없으므로 법인의 신청에 따라 보류 검토

□ 예 외

- 시 및 자치구에서 이미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
- 구체적인 누락세원 정보가 있는 경우 등
- □ 신청방법 :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제2항 조사연기 신청 준용
- □ 추진일정 : 2016. 3.부터 적용

4 세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세무조사대상 선정단 운영

- □「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」 구성 및 운영
 - O 선정단 구성 : 내부 및 외부위원 6인 이내
 - 외부위원 :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지방세 전문가 2명
 - 내부위원 : 세무1과장, 재산1팀장, 법인2팀장, 세무행정팀장
 - 위 원 장 : 세무1과장
 - 간 사 : 법인1팀장
 - O 선정단의 기능

- 직접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과 조사대상 법인 수를 결정하고, 필요 시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
 - ⇒ 단, 지방세 탈루가 의심되어 특별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선정단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세무조사 가능
- O 대상자 선정기준 등의 결정
 - 재적인원 2/3이상 출석하고. 출석인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시 의결
- □ 세무조사 선정의 기본원칙
 - 고액 부동산 취득으로 지방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기업
 - 타·시도 등 다수의 사업장으로 우리시의 지방세 과소신고 우려가 있는 기업
 - 개최시기 : 당해년도 세무조사 위해 4월내 개최

청렴하고 친절한 세무조사 추진

□ 방지대책

- 세무조사 공무원 현장행동 수칙(10계명) 생활화
 - 기본 : 친절·공정, 금품 및 향응 요구 등 절대금지
 - 식사 : 항상 조사직원 간 동행, 조사법인과 식사 절대금지
 - 행동 : 조사장소 내외 및 출장 시 반드시 2인 이상 동행
 - 상담 : 조사장소 이외 장소 또는 단독으로 조사법인과 상담 절대금지 등
 - 현장 출장조사 리콜제 도입
 - 출장단계 : 부서장에 출장지, 출장목적 등 신고와 청렴의지 표명
 - 출장현장 : 부서장에 출장지 도착사실 등 상황 보고
 - 조사현장 식사 시 등 모든 경우 2인 이상 행동, 어떠한 편의도 받지 않음
 - 출장귀청 : 부서장에 출장복귀 결과보고

- 조사내용, 분위기, 사적편의 등 부적정 사례 여부 등 보고
- 퇴근 후 : 퇴근 후는 물론 주말에도 조사대상 법인 등 접촉 금지
- 세무조사 후 조사받은 기업 관계자에 유선으로 조사실태 점검·확인
 - 조사공무원의 친절도, 금품 접대요구 여부 등 조사과정에서 불편사항 등 전반에 걸쳐 확인
- □ 시행시기 : 2016. 1. 세무조사시부터 적용

V

세원발굴포상금 지급

- □ 지급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시·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
- □ 지급대상 :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 및 정보 제공자
 - 취득세원(부동산 또는 차량취득세, 구 부동산 또는 차량 등록세)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 및 추징에 관한 중요 자료 제공 자
- □ 지급조건 :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
 -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발굴세액이 징수되고,
 - 불복청구가 없으면서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
- □ 지 급 률 : 징수액의 100분의5(단, 부과건당 30만원, 인별 월 100만원한도)

VI

행정사항

- ① 자체 세무조사 추진계획 수립 결과 보고(서울시): 2016. 2. 27한
- ②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및 사전 통지문 발송
 - □ 「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단」에서 선정한 대상자를 조사

| □ 세무조사개시 10일전 세무조사 사전통지문 발송(별지 제68호서식) |
|--|
| 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및 일자리창출 우수법인 등 선정제외 |
| ③ 세무조사 공무원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|
| □ 친절하고 예의바른 조사 자세 및 청렴 교육 |
| □ 세원발굴 실적은 부과코드별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 철저 |
| □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등 |
| |

첨부 법인 부동산취득세 신고자료(2011~2015년)